◈ 政府 施策 ◈

國産기계 購入 · 리스 外貨貸出 허용

- 通産部, 자본재산업육성대책 추진계획 확정 -

오는 7월부터 국산기계를 구입하는 기업이나 임대 목적으로 국산기계를 구입하는 리스회사에 모두 25억달러 규모의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또 상반기 중 우수품질마크(EM)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사업이 실시된다.

통상산업부는 자본재산업 육성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통산부는 국산기계 구입 및 리스용에 대한 외화대출을 위해 상반기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기업으로부터 자금융자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대출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외화대출은 우수품질마크제품과 국산화 전략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는 또 기계류 및 산업설비에 대한 연불수출자금 지원규모를 작년보다 1조원 늘어난 3조 4200억원으로 확정, 외화가득률이 높은 자본재품목을 우선지원하고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용할 방침이다.

자본재산업의 생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 기존의 건설공사업과는 별도로 산업설비공사업을 신설, 오는 6월로 예정된 건설업법 개정때 이를 반영시킬 계획이다.

또 자본재용 소재 종합유통센터를 올해 설립 예정인 인천의 자본재산업 종합지원센터와 전주의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하고 향후 각 시 · 도의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본재의 품질보증업무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예산 25억원으로 하자보증사업기금을 조성, 상반기중 우수품질마크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창업투자회사에 130억원을 융자, 우수품질 마크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올해 800여개 품목에 대해 우수품질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술·인력 및 정보지원에도 적극 나서 공고·전문대·공과대학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에 4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상반기중 우수설계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소득세감면대상 현장 기술인력의 범위를 확정해 올해부터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자본재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수입규모가 크고 수입대체효과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수급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96년도 工基盤 기술 신규지원 대상 공고

- '96. 5. 27~6. 1 신청 접수 -

통상산업부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의 1996년도 신규지원 대상 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해당기술과제를 5月 27日 부터 6月 1日까지 신청 접수키로 했다.

■ 공고내용

1. 지원분야

사 업 구 분	지 원 분 야
•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 별첨에 열거된 113개 기술분야 • 공고분야 이외 과제(자유과제)로서 핵심부품, 신소재,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대일무역역조 개선과 관련된 기술 (자유과제 총예산은 30억원 규모임)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외국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협력상대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용화개발 연구로서 자유로이 응모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단, S/W업체,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는 예외로 인정)

②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③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

④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및 전문회사, 산업기술정보원, 한국생산성 본부

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⑥ 공업발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자 단체

⑦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법인

나. 지원규모

○ 총 개발비의 2/3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금으로 추진

다. 신청방법

○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의함.

○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의 113개 기술분야는 공고된 각 기술분야별 개발 내용 및 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중 자유과제는 주관기관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우선 지원함.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02-860-1644/9)

○ 접수기간 : '96. 5. 27~'95. 6. 1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유효)

마. 참고사항

-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과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은 1개 과제당 정부 출연금 지원규모를 년 3억원이내로 하며 총 개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기술의 내용이 기개발,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는 심의시 지원제외될 수 있음.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 출연금의 50%를 5년 균등분할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예산사정과 분야별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기술료 非徵收과제로 공고되어 있으나 평가시 기술료징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시에 개발결과의 공동 활용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96 공통애로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분야

구 분	기 술 분 야
중전기기	• 전력관리 제어시스템 개발 • 직류차단기 및 전철용 GIS 차단부 개발 • DC 전원 공급장치 개발

환경경영 시범인증 실시

- 通産部, 7월부터 시범 실시 -

통상산업부는 오는 7월부터 국내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환경경영체제(ISO 14000) 시범인증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올 하반기 중에 국제환경경영 규격이 제정돼 내년부터 각국에서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환경경영인증제도의 조기 기반구축을 위해 7월부터 시범인증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5월 1일 후보 인증·연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를 공고하고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인증·연구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실시한 후 6월말까지 후보 인증·연수기관을 지정해 7월 1일부터 신청업체에 대한 시범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인증사업은 각 후보인증기관별로 시범인증실시 대상업체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해 '質' 위주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신청업체가 희망할 경우 인증획득에 필요한 각종 자료제공은 물론 전문가에 의한 현장지도도 실시해 완벽한 환경경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가 시범인증·연수기관에 대한 지정검사, 심사원의 자격시험 실시등 정부기능의 중요 역할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ISO 인증제도 운영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시범인증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별 주요역할을 설정했는데 국립기술 품질원은 후보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지정기준과 예비 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공고토록 했다.

품질환경인증협회는 국립기술품질원이 공고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보 인증·연수기관을 예비심사원 자격시험을 시행해 시범인증 사업에 투입될 예비심사원 배출을 담당하게 된다. 또 각 후보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연수기관들은 각각 신청업체에 대한 환경경영체제 심사를 실시, 적합한 업체에 시범인증서를 수여하고 환경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개설해 예비심사원을 교육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시범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식제도 시행시 향후 제정될 ISO/KS 14000 규격과 시범인증 심사기준과의 차이점 등 최소한의 요건만을 사후관리를 통해 심사해 공식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ISO 14000 시리즈는 규격중 핵심이 되는 환경경영체제(EMS)가 오는 6월 브라질총회에서 채택된 후 각국의 투표를 거쳐 9월에 열리는 ISO총회에서 정식채택돼 내년부터 각국에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에 대한 시범인증사업을 실시하는 등 ISO 14000 도입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특정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 과기처, 총 7,745억원 투입 —

과학기술처는 올해 선도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거대과학기술개발사업 등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총 7,74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과기처는 최근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및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전문가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체 지원규모 7745억원 중 2584억원은 과기처가 지원하고 나머지 5161억원은 통산부 등 관련부처와 한국통신 등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의 대응자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사업별로는 △신의약·신농약, 차세대반도체 등 18개 선도기술개발사업에 5394억원 △핵심산업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국책연구개발사업에 1170억원 △다목적실용위성, 우리별 3호 등 거대과학 및 공동연구시설 선진화에 660억원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기반조성사업에 162억원 △연구기획평가사업에 53억원 △출연硏의 전문화 및 일류화사업에 306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선도기술개발사업 중 고속전철기술, 민군겸용기술 등 2개 사업이며 국책연구개발사업에는 미래원천기술, 대형기계설비기술, 3세대 CFC 대체물질개발, 소프트사이언스, 해양과학기술 등 5개사업 등이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 능력의 배양과 핵심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지난 82년부터 작년까지 정부부문 1조 1496억원, 민간부문 8759억원 등 모두 2조 255억원이 투입돼 1만 235개 단위과제를 지원했 왔다.

이같은 연구개발 추진으로 947건이 기업화에 성공했고 산업재산권 취득건수가 1051건에 달하며 10건은 해외에 기술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도급 物品代 우선 지급업체 우대

- 조달청, 정부조달 入札서 가산점 -

하도급업체에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업체는 정부조달 입찰에서 최고 2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받음에 따라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하도급 전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물품대금 5억원이상, 납기 6개월이 넘는 물품의 입찰참가 업체 가운데 협력업체에 대해 계약금액을 5%이상 지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0.5점에서 최고 2점까지 가산점을 받도록 했다.

또 제조업관련 평가에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키 위해 신용평가에서 우량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업체는 기계장치비율이나 연구개발비율 판정결과를 각각 1등급씩 상향 조정토록 했다.

조달청은 해당업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안에 결산서를 근거로 한 신용조사서로 대체토록 하는 등 적격심사 행정소요일수도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다.

◆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입지정보망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가 신설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제도가 대폭 조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터 협의를 거쳐 4.15 입법예고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첫째,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건설교통부에 두도록 함에 따라 산업입지 정책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입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
- 둘째,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별·업종별·산업단지별 산업입지의 공급전망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산업단지의 개발 시기·규모 등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하고, 매년 산업입지수요에 따라 공급실적 등을 감안,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함.
- 셋째, 산업입지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기업과 관련기관에 산업입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합리적인 산업입지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고자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정보망을 운영하고 위탁관리할 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넷째, 현재 시·도지사가 30만평방미터 이상의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100만평방미터미만까지는 시·도지사가 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자율적인 개발을 활성화함.

-다섯째,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조달능력과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신탁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본 개정안은 관계부터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조정한 후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기업이 산업용지를 적기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충고

1. 하고싶은 일보다 꼭 해야하는 일을 먼저하라
2. 그일이 끝날때까지 시간과 관심을 최대한 집중하라
3. 당장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4. 실패했으면 다시 시도하라
5.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라
6. 날마다 그일의 진행상황을 기록하고 목표를 확인하라
7. 나쁜 상황에서도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지마라
8. 자신이 얻은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라
9. 옳다고 생각한 일을 끝까지 고수하라
10. 요청한 것보다 더많이 일하라.